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3-1관련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2. .

발의자 :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가. 중복 표기된 문구를 삭제하고 ‘이사’의 범위를 명확히 함.
- 나. 재단의 대표성을 표시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재단의 임원 중 ‘상임이사’ 명칭을 ‘대표이사’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중복 표기된 문구를 삭제함. (제2조)
- 나. ‘이사’를 ‘이사(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)’로 변경함. (제7조)
- 다. ‘상임이사’ 명칭을 ‘대표이사’로 변경함. (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 중 “**한다**)재단”을 “**한다**)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**상임이사**”를 “**대표이사**”로, “**이사**”를 “**이사(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**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“**상임이사**”를 각각 “**대표이사**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**상임이사**”를 “**대표이사**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**상임이사**”를 각각 “**대표이사**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**상임이사**”를 “**대표이사**”로 한다.

사로 구분하되 당연
직 이사는 구의 관광
경제국장과 재정관
리국장으로 하고, 선
임직 이사는 구청장
이 임명한다.

사로 구분한다.

-----.

-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
(생략)
② 상임이사는 재단을
대표하고 그 업무를
통할한다.
③ (생략)

- 제8조(임원의 직무) ①
(현행과 같음)
② 상임이사는 재단을
대표하고 그 업무를
통할한다.
③ (현행과 같음)

- ⑤ 대표이사-----

-----.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
(현행과 같음)
② 대표이사-----

-----.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
에는 의사결정기구
로 이사회를 두되,
이사회는 이사장과
상임이사 및 이사로
구성한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
에는 의사결정기구
로 이사회를 두되,
이사회는 이사장과
상임이사 및 이사로
구성한다.

제9조(이사회) ① ----

----- 대표이사 -
-----.

- ② (생략)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때에 이
사회를 소집하고, 그
의장이 되어 이사회

- ② (현행과 같음)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때에 이
사회를 소집하고, 그
의장이 되어 이사회

- 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
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생략)

제10조(직원의 임면)
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임명한다.

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직원의 임면)
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가 임명한다.

----- . -----

----- 대표이사-----
----- 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직원의 임면) -

----- 대
표이사----- .